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징금 제도 개편〉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19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66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91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I . 제안경위

1. 박상혁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12. 12.

다. 회 부 일 : 2025. 12. 15.

2. 이만희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2. 16.

다. 회 부 일 : 2025. 12. 17.

3. 조인철의원안

가.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12. 22.

다. 회 부 일 : 2025.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상혁의원안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및 IT 기업들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와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금번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수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숨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과징금 납부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실정임.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4%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 관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지우거나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2. 이만희의원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3. 조인철의원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 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

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6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 **박상혁의원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고(박상혁의원안 제64조의2제2항 삭제, 제3항),
- 이만희의원안**은 과징금 부과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며(이만희의원안 제64조의2제1항),
- 조인철의원안**은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조인철의원안 제64조의2제6항 단서 신설).

현행	박상혁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 ----- ----- ----- ----- -----100분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보호위원회
는 제1항에 따
른 과징금을 부
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
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
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
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③ 보호위원회
는 제1항에 따

의 6-----

---40억 원-----

1. ~ 9. (현행
과 같음)

② ~ ⑩ (현행
과 같음)

<삭 제>

③ _____

출한 경우에는 해당 제

④ ~ ⑩ (현행
과 같음)

⑥ _____

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 ----- ----- ----- ----- --.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내에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20억원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과징금 부과액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매

출액 기준에서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u>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u>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u>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도
--

난·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

□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수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며,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감경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이는데, 개정안들 심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박상혁의원안**과 같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역시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경우, 위반행위의 특성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비례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경우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매출액 기준 산정 시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특성·중대성, 고의·과실 및 기타 가중·경감 정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제반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개입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리 우려가 있고, 법인 분리 여부 등 기업 형태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제재의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다음으로, **이만희의원안**의 경우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려는 내용인데, 지난 2025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¹⁾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²⁾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상향³⁾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개정안

1) 2026년 2월 초 기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2) **(의결안 중 과징금 관련 주요내용)**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 (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심사 시 의결법안과의 관계 및 심사경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 억지력 강화 및 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과징금을 상향하는 경우 상향 정도, 매출액 산정 범위 등 제재처분의 비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조인철의원안**은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4조에서는 이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3)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2025. 12. 15.)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4%로 상향하는 개정안들*을 심사한 결과 현행 상한인 3%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 이훈기의원안(2212857), 김승원의원안(2214750)

4)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은 자가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과징금 면제⁵⁾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인철 의원안은 최초의 위반행위 유형과 관계 없이 3년 이내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한 모든 경우에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비해 보다 강화된 감경 제한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러 규정하려는 것임.

○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제재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이나, 다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실로 인한 과징금 부과사유에 대하여까지 일률적으로 감경을 금지할 경우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입법정책적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4조(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①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2.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5) 다만 ‘면제’가 아닌 ‘감경’은 제한하고 있지 않음.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난 2026년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⁶⁾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한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과징금의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과의 관계 및 심사경과를 감안할 필요도 있겠음.
-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반복 위반은 이미 과징금 산정 시 가중사유로 일부 반영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감경 적용까지 제한할 경우 동일 요소가 중복 반영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2026. 2. 12. 본회의 의결법안 중 과징금 관련 내용]

현행	본회의 의결안(2026. 12. 17. 의결)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u><신설></u>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u>

6) 2025. 12. 17. 정무위원회 의결

<신 설>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문 의 처
02)6788-5108